##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804

발의연월일: 2025. 1. 24.

발 의 자:문금주・김문수・권칠승

이학영 • 한민수 • 문정복

황정아 • 주철현 • 안도걸

이정문 · 신영대 · 서삼석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차 통계를 공식 집계하기 시작한 2017년 전기차 등록 대수는 25,108였으나, 2024년 상반기까지 국내 등록 전기차 누적 대수는 606,610대로 약 24배가량 증가함.

한편, 전기차 충전기 누적 보급 대수도 36만대를 넘어섰으며, 민간 정유회사들을 중심으로 휘발유와 경우, LPG 등을 판매하는 기존 주유소를 전기차 또는 수소차 충전시설을 갖춘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전환이 이루어 지고 있음

하지만 지역농협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도 전국에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명확한 근거 가 없어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역농협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에 전기차·수소차 충전 시설의 설치·운영을 규정함으로써 농협 주유소를 친환경 에너지 거 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2호타목 및 제161조의4 제1항제7호 신설). 법률 제 호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0호나목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 료공급시설의 설치·운영

제161조의4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나목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 급시설의 설치·운영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사업) ① 지역농협은 그	제57조(사업) 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수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제사업	2
가. ~ 카. (생 략)	가. ~ 카.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나목에
	<u>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u>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
	급시설의 설치・운영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61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제161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사업) ①
그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수행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u>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운</u>
	<del>여</del>
<u>7.· 8.</u> (생 략)	<u>8.•9.</u>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